

대형안심보험(2종) 보통보험 약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때로부터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 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입증(立證)하는 경우
4. 계약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망 또는 제1급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로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의 2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 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 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3 조 (계약 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1.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반환하고,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5일이내에 그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 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 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5 조 (계약의 무효)

①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8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② 제 1 항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 2 보장기간 개시일에 살아 있을 때
2. 보험기간중 별표 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별표 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 1 급의 장해(障害) 상태가 되었을 때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 1 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4. 계약일 이후 피보험자가 제 1 보장 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 2 급 내지 제 6 급의 장해(이하 “장해”라 합니다) 상태가 되었을 때

②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장해분류중 제 2 급 또는 제 3 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2항의 경우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계약일 이후 피보험자가 제1보장기간중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자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감한 차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의 후단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자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자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3호, 제4호 또는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7조 (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확정배당금으로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재무부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드립니다.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등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증 제 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보험금 등 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② 제 1 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합니다.

1. 제 1 항 제 1 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 니다.

2. 제 1 항 제 2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등에 해당하는 해 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 1 항 제 3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 니다.

제 9 조 (전쟁 또는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증 제 1 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 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인 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 니다.

제10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

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 1 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때

3.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 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 2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의 2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을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 되었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월이

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

- ①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이 계약의 납입방법과 수금방법에 따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 6조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3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 1 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 ①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1 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재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부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 1 항을 적용합니다.

제14조의 2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전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에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약관대출금으로 유예기간중에 납입하여야 할 보험료를 납입(이하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라 합니다)하여 드립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로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유예기간까지의 이자(약관대출이율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더 이상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 ③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당해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대출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이루어 진 때에는 그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⑤ 제 1 항에서 규정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은 계약자가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이루어 집니다.
- ⑥ 이 보험에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 제 1 항 내지 제 5 항의 규정은 부가되어 있는 특약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제15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정기예금이율 범위내(예정이율이 정기예금이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제외)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 1 조, 제 3 항, 제 2 조, 제 3 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16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 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7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6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 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 또는 장해불능표증 제 1 급의 장해로 인한 보험금, 장해급여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③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경우에 당해년도의 미납입보험료가 있어도 이를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2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⑤ 회사는 장수설계자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3일이내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⑥ 장수설계자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18조 (보험금 수령방법의 선택)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망 또는 제1급장해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7조 규정에 의한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이외에 다른 지급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후에는 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그 지급방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 중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19조의 2 (계약연령의 계산)

- ① 피보험자의 계약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계산합니다.

니다.

- ② 피보험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만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제20조 (계약자의 임의 해지)

계약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제21조 (약관 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21조의 2(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보험증권의 재교부 등)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무료로 보험증권의 정정, 배서, 재교부 등을 해드립니다.

제25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 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26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가. 세목별 보장기간

세목	제 1 보 장 기 간	제 2 보 장 기 간
50세	책임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가 만50세 에 달하는 계약해당일 전까지	제 1 보장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 까지
55세	책임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가 만55세 에 달하는 계약해당일 전까지	"
60세	책임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가 만60세 에 달하는 계약해당일 전까지	"
65세	책임개시일로부터 피보험자가 만65세 에 달하는 계약해당일 전까지	"

나.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여명	지 급 사 유	지 급 내 용		
장수설계 자 금	제 2 보장기간 개시일에 살아있는 때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재해이외의 원인 (제 6 조 제 1 항 제 2 호)	제 1 보장기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0% 및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제 2 보장기간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0%	
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보험금	재해로 인한 원인 (제 6 조 제 1 항에 3 호)	제1보장 기 간	5배형 10배형 20배형	계약보험가입금액의 500% 1,000% 2,000%
		제2보장 기 간	5배형 10배형 20배형	50% 100% 200%
장해급여금	제 1 보장 기간 중 재해로 인한 장해시 (제 6 조 제 1 항 제 4 호)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	70% 50% 30% 15% 10%

(별표 2)

해약환급금예시표

(남자)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 10만원
 10배형, 35세 가입
 Y세 남, 월납

Y 구분 경과기간	50		55		60		65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1 개월	444	0	347	0	304	0	284	0
1 년	5,328	329	4,164	0	3,648	0	3,408	0
3 년	15,984	8,667	12,492	5,228	10,944	3,708	10,224	3,007
5 년	26,640	18,843	20,820	12,660	18,240	9,939	17,040	8,689
10 년	53,280	47,163	41,640	32,041	36,480	25,407	34,080	22,370
15 년	79,920	84,518	62,460	56,255	54,720	43,871	52,120	38,208
20 년	—	—	83,280	88,395	72,960	67,300	68,160	57,663
25 년	—	—	—	—	91,200	96,876	85,200	80,888
30 년	—	—	—	—	—	—	102,240	108,510

(여자)

Y 구분 경과기간	50		55		60		65	
	납 입 보험료	해 약 환급금						
1 개월	265	0	197	0	166	0	150	0
1 년	3,180	0	2,364	0	1,992	0	1,800	0
3 년	9,540	4,706	7,092	1,710	5,976	658	5,400	109
5 년	15,900	10,679	11,820	6,443	9,960	4,542	9,000	3,571
10 년	31,800	28,139	23,640	17,838	19,920	13,185	18,000	10,847
15 년	47,700	50,921	35,460	31,835	29,880	23,196	27,000	18,877
20 년	—	—	47,280	50,917	39,840	36,442	36,000	29,226
25 년	—	—	—	—	49,800	53,944	45,000	42,405
30 년	—	—	—	—	—	—	54,000	58,735

(별 표 3)

재해분류표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경제기획원 고시 제30호, 1979. 1. 1 시행)중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대한 분류"에 의한 것임.

분류항목

분류항목	분류번호
1. 철도사고	E800 - E807
2. 자동차 교통사고	E810 - E819
3. 자동차 비교통사고	E820 - E825
4. 기타 도로교통기관사고	E826 - E829
5. 수상교통기관사고	E830 - E838
6. 항공기 및 우주교통기관사고	E840 - E845
7. 다른 곳에 분류되지 아니한 차량사고 (케이블카, 곤돌라 등)	E846 - E848
8.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은 제외한다.	E850 - E858
9. 기타의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다만,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001내지 799에 분류가 가능한 것은 제외한다.	E860 - E869
10.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다만,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는 제외한다.	E870 - E876
11. 불의의 추락	E880 - E888
12. 화재 및 화염에 의한 불의의 사고	E890 - E899
13.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는 제외한다.	E900 - E909 (278.5)

분류 항목	분류 번호
14.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다만,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킬장애는 제외한다.	E910 ~ E915
15. 기타 불의의 사고 다만,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E916 ~ E928 (E927)
16.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E930 ~ E949
17.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해	E950 ~ E969
18. 법적개입. 다만, 처벌은 제외한다	E970 ~ E978 (E978)
19. 불의인지 고의인지 분명치 않은 상해	E980 ~ E989
20. 전쟁행위에 의한 상해	E990 ~ E999
21. 전염병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별표4)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제 1 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1.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에서 제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4.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제 3 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등급	신체장애
	<p>7.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p> <p>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p> <p>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제 4 급	<p>1. 두눈의 시력이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 을 때</p> <p>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p> <p>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p> <p>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p> <p>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되었을 때</p> <p>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p> <p>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p> <p>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 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p> <p>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 을 때</p> <p>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 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p>
제 5 급	<p>1.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 구히 남겼을 때</p> <p>2.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p> <p>4.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p> <p>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p> <p>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등급	신체장애
	<p>7.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8. 두귀의 청력을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9.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p> <p>10. 고개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제 6 급	<p>1. 한발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2.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p> <p>3.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p> <p>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5.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p>7.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p> <p>8.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p> <p>9.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p>

(장해등급분류해설)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도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ㅁ, ㅂ, ㅍ),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중 3종류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

- 2) 뇌언어증후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통식(미음등)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대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들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팔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麻痹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목, 손목, 다리는 풀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1.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2.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의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목뼈가 완전강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혀기, 좌우굽혀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3.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말골절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첫째손가락은 자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4.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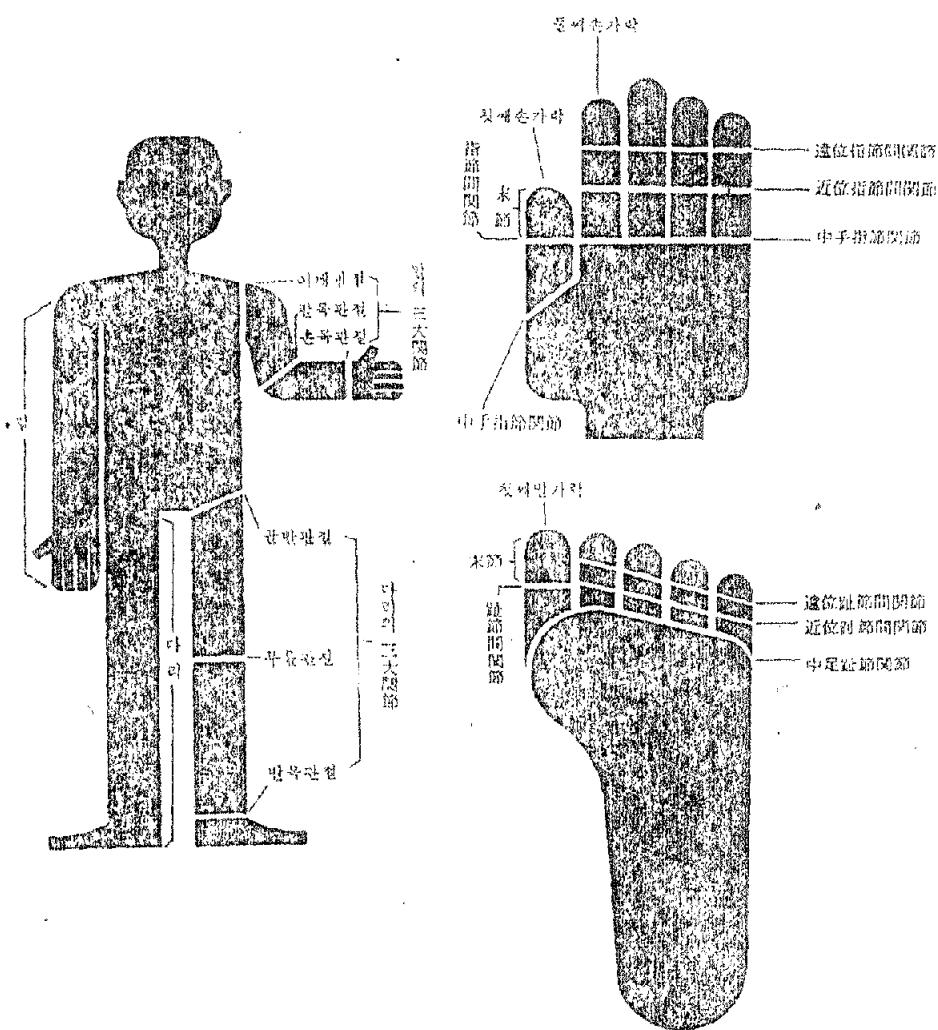
나.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발가락은 말골절의 1/2이상 그외 발가락을 원위지질간관절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질관절 또는 근위지질간관절(첫째발가락은 자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신체의 동일부위"

-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비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상해등급분류표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1, 2, 3,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신체부위의 설명도



대형 안심보험

제 3회 입 원 특 약 (2종) 약관

대형안심보험 재해입원특약(2종) 약관

-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에서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제2보장기간(이하 "제2보장기간"이라 합니다)
개시일에 살아 있을 때
 2. 특약기간중 주계약 약관 별표3(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제1보장기간(이하 "제1보장기간"이라 합니다.)
등 재해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 선고(失踪宣告)가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였거나, 주계약 약관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障害)상태가 되었을 때
- ⑤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 제2호에 의한 입원은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은 제외합니다)에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하여야 하며 동일사고에 대하여 통상 입원일수는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⑦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재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⑧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이상 입원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⑥ 입원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보험기간중에 발생하여 보험기간이 끝난 후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금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금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그러나 그 수의자가 금여금의 일부 수의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의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금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특약의 해지)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금여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후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합니다.

제5조(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개시일로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 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7조(효력 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8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금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증명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금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9조(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8조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금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금여금의 경우, 지금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금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내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加산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2 "해약환급금 예사표" 참조) ④ 회사는 장수설계자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그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⑤ 장수설계자금과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이하 "정기예금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加산하여 드립니다.

제10조(특약 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배서(背書)하여 드립니다.

② 계약자는 특약기간중 금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없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1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금여금 지급사유 발생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청약시까지 이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것을 이유로하여 청약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이 특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 납입일의 다음날 부터 반환일까지 정기예금이율로 계산된 금액을 가산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릇을 제거하여 드립니다.

제12조(약관 대출)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재지급금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제13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급여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장수설계자금	제2보장기간 개시일에 살아 있을 때(제2조 제1항 제1호)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입원급여금	재해로 인하여 입원하였을 때(제2조 제1항 제2호)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계약보험가입 금액의 0.1%
사망 또는 제1급 장해급여금	제1보장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조 제1항 제3호)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

(부록 2)

체 약 환급금 예시 표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 10만원 + 35세 가입, 남성, 월납							
		(남자)							
구분	Y	50		55		60		65	
		남	입	해	약	남	입	해	약
장기기간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1 개월	-	171	111	101	31	81	41	71	41
1 년	-	2041	1371	1201	401	961	481	841	461
3 년	-	6121	4281	3601	1821	2881	1381	2521	1101
5 년	-	1,0201	7651	6001	3461	4801	2421	4201	1841
10 년	-	2,0401	1,8541	1,2001	8751	9601	5751	8401	4181
15 년	-	3,0601	3,4321	1,8001	1,6321	1,4401	1,0441	1,2601	7421
20 년	-	-	-	2,4001	2,7391	1,9201	1,7131	1,6801	1,1911
25 년	-	-	-	-	-	2,4001	2,7031	2,1001	1,8271
30 년	-	-	-	-	-	-	-	2,5201	2,7851

(여자)

		기준 : 계약보험가입금액 : 10만원 + 35세 가입, 여성, 월납							
		(여자)							
구분	Y	50		55		60		65	
		남	입	해	약	남	입	해	약
장기기간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1 개월	-	181	131	111	71	81	41	71	41
1 년	-	2151	1601	1321	851	961	451	841	431
3 년	-	6481	4711	3961	2401	2881	1361	2521	1121
5 년	-	1,0801	8301	6601	4201	4801	2421	4201	1841
10 년	-	2,1601	1,9911	1,3201	1,0021	9601	5811	8401	4161
15 년	-	3,2401	3,6651	1,9801	1,8351	1,4401	1,0661	1,2601	7451
20 년	-	-	-	2,6401	3,0411	1,9201	1,7601	1,6801	1,2101
25 년	-	-	-	-	-	2,4001	2,7701	2,1001	1,8781
30 년	-	-	-	-	-	-	-	2,5201	2,8551